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기타재산수입
54-545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재산수입	0.5	1.0	1.0	1.0	1.0	-	-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1조 제2항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통장 이자 및 정산금
- 세출·세입 외 현금 통장 이자 발생분 및 단수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0.2	0.6	0.8	0.5

위약금
57 - 572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위약금	0.2	5.0	5.0	-	-	△5.0	순감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2. 세입 개요

-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3	1.4	-	0.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3.7	95.0	95.0	10	10	△85	△89.5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 호봉정정 등에 따른 과년도 급여 정산금 환수
- 인권단체 국고보조금 정산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3.5	10.2	11.4	14.4

기타잡수입
69-691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액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잡수입	-	1.0	1.0	1.0	1.0	-	-

1. 법적 근거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
 *17년부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2. 세입 개요

- 공적 항공마일리지 개인 매매대금
- 인권도서관 복사수수료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3.5	0.6	0.2	-

세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인건비 (1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10	016
명칭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1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건비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인건비	17,204	19,002	19,002	19,535	19,535	533	2.8

4.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을 지급
- 인건비소요 : 257명(정원 234명, 별도정원 13명, 전문임기제 7명, 청원경찰 2명, 신규증원 1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근거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가인권위원회 257명(별도정원 등 포함)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인권위 직제에 따라 인권위 공무원에게 봉급 및 각종수당 지급

사 업 명
(3)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1,669	1,750	1,750	2,040	2,040	290	16.6

4. 사업목적

- 인권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위 기관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정규모로 분기별 예산배정 및 집행

사업명						
(3)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관운영 기본경비	6,634	6,769	6,769	6,969	6,969	200	3.0

4. 사업목적

- 인권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위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정규모로 분기별 예산배정 및 집행

사업명	
(4) 인권의식 증진 (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식 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인권의식증진	859	1,138	1,138	775	775	△363	△31.9

4. 사업목적

- ①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 인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웹진「인권」을 발간 배포하고, 웹접근이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 정신병원, 쉼터, 사회복지시설, 작은 도서관 등)에 인쇄본 잡지 격월간「인권」배포
- ②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 대중들의 인권감수성 확대를 위해 언론·뉴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등)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인권관련 정책과 내용을 알려, 인권 및 인권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

③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홍보

- 인권위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국가기관임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권위의 결정례를 이해하기 쉬운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

④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제작·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⑤ 인권작품 공모

- 일상생활 속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인권이 생활 영역 곳곳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생성 및 발굴을 위해 청소년·일반시민들에게 공모전 참여 기회를 제공

⑥ 인권의 날 행사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인권상 수여,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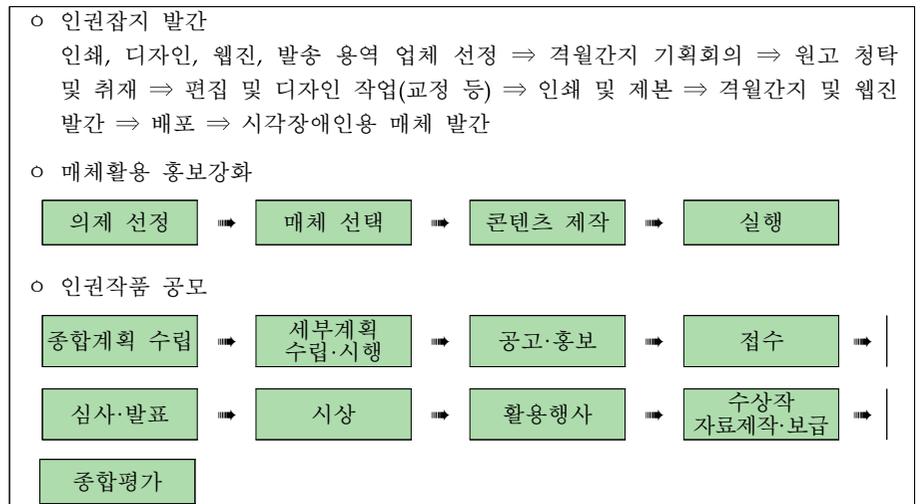
- 2003. 8. 1. 월간 “인권” 발간, 매호 31천부 발간
- 2004. 5. 인권잡지 웹진 제작 및 홈페이지 탑재, 시각장애인용 목점자 인권잡지 발간
- 2007. 예산 감소로 격월간으로 변경, 매호 22천부 발간
- 2009. 12. 통권 59호 발간
- 2016. 예산 감소로 웹진 중심 운영, 매호 3,500부 발간
- 2021. 12. 통권 137호 및 웹진 발간
- 2006년 이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장애, 나이, 성, 학력 등) 주요 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문화콘텐츠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콘텐츠 개발
- 2018 ‘진정하세요’, 2019 ‘비밀의 비밀’, 2020 ‘차타공인’, 2021 ‘터밍’ 제작 보급
-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통해 인권선언의 의미를 알리고, 우리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사례 전파를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 도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5) 지역인권문화 확산 (1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지역인권문화 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지역인권문화 확산	435	315	315	324	324	9	2.9

4. 사업목적

- ① 인권체험관 운영
 - 지역민의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인권 주제의 예술작품 기획 전시 및 시민, 학생 등에게 인권체험 제공
- ② 지역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문화 확산
 -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언론, 블로그, SNS 및 인권영화제, 캠페인,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진행
 - 지역 내 인권 시민 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 대응 및 인권교육, 홍보, 협력사업 추진
 - 세계인권선언기념 기념일을 맞아 인권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문화, 간담회, 캠페인 등 행사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5호 및 제8호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같은 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8. 10. 광주인권체험관 개관, 권역별 상담네트워크 운영
- 2009. 시민참여형 인권홍보 추진, 이주민 차별인식 캠페인 추진
- 2010. 4. 부산인권체험관 개관, 권역별 상담네트워크 운영 추진
- 2013. 7. 대구인권체험관 개관
- 2015. 인권옹호자 협력프로그램 운영
- 2016. 6. 대전인권체험관 개관
- 2019. 2. 강원인권체험관 개관
- 2020. 9. 대전인권체험관 이전 개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627	1,672	1,672	2,089	2,089	417	24.9

4. 사업목적

① 인권 연수과정 운영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학교·공공·시민영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강사 양성

②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사회 각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과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③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 교육기관별,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교육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인권교육 법제화, 제도화 등 기반조성 사업 지속적 추진
- 국가기관·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NGO, 학교, 전문가,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시행

④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상·내용·수준별(공공·학교·시민영역의 활용성이 높은 형태의 인권교재, 외국 우수 인권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⑤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업무 영역별 및 대상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전문 역량강화

⑥ 인권도서관 운영

- 인권정보 접근의 지역 간 균형을 통한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서비스 및 장서이용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및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유엔 7대 협약의 인권교육 권고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의 인권교육 선언과 관련 행동계획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33조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 A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선언은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10년(1995-2004) 행동계획 제10조	(a) 모든 단계의 학교(...) 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 전략의 수립 (b)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 수립 (c)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의 공동 개발 (d) 인권교육 증진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 (e) 가능한 한 많은 언어에 의한 (...) 세계인권선언의 국제적 보급
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09)	·초중등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여 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둠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증진(제17조)
제2차 행동계획 (2010-14)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2011.12.19.)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성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 강조(제1조)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제7조~제9조)
제3차 행동계획 (2015-19)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와 제2차 행동계획의 이행을 증진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대상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② 추진경위

- 2003. 법무부, 경찰청 등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이 가장 활성화
- 2005.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 2006. 방문프로그램, 인권문화 이벤트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운영
- 2009.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실시
- 2010. 연간 연수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인권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활성화
- 2010. 인권정책리더(공무원 및 광역·기초의원) 과정 신설
-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권역별 실시
- 2012. 인권교육 중장기 행동계획[2013~2022]을 통해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전 생애 평생교육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목표 설정
- 2013. 효과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및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 2014.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지속 실시 및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기초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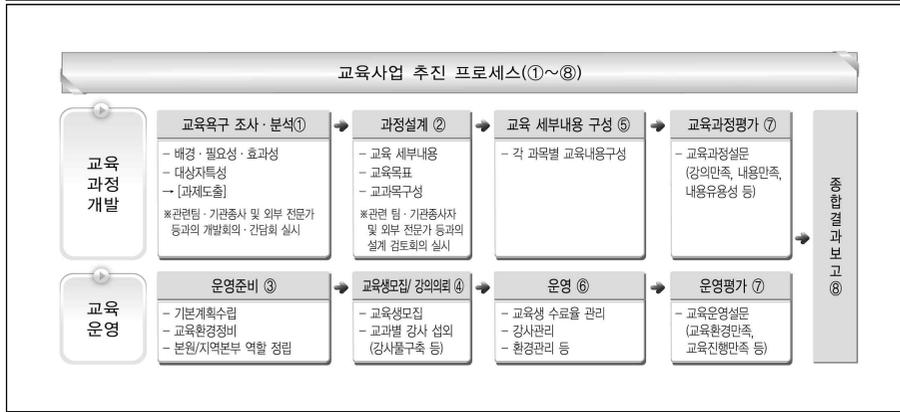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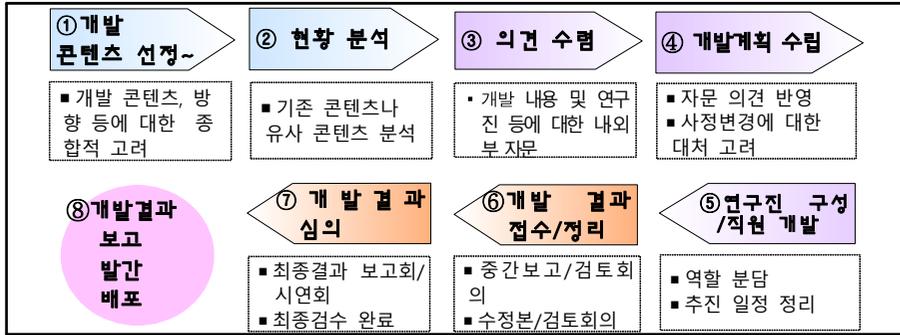
- 2016.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대상별 전문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하여 내실있는 인권교육 수행,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 및 인권교육포털 구축
- 2017. 인권교육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전문화, 인권교육 기본 콘텐츠 개발,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확장
- 2018. 노동분야 발굴 등 사회적 인권수요에 부응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 시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 2019. 인권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한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및 교류협력 강화
- 2020. 코로나19 확산을 고려, 원격교육, 소규모 대면교육, 사이버교육 등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 2021.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확대,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등 일상적 소통 및 협력 활성화로 맞춤형 인권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추진단계】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적 접근으로 공공·학교·시민영역에 인권교육 과정 실시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단체 협의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 과목 및 과정이 반영되도록 함.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강사인력 양성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인권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정규 과목화가 이루어지면 운영현황과 강의평가 실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단계】	



사업명	
(7)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40	160	160	343	343	183	114.4

4. 사업목적

-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문상담사 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상담의 질 제고
 - 변호사, 노무사, 일반상담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 운영을 통해 인권상담 전문성 강화
 - 수어상담은 107손말이음센터 화상상담 및 서울특별시 농아인 협회 중구지회 수서통역센터 대면상담 운영

- 외국어상담은 한국관광공사와 제3자간의 통화 상담 운영
- 방문 예약 상담을 통한 상담의 질 향상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담 방안 강화

② 인권현장 대응

-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 한센인, 청소년, 노인 등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행사 현장에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는 순회상담과 인권현안 발생 시 현장 상황 모니터링,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는 현장 긴급 대응으로 운영함

③ CTI 전화상담 시스템 등 운영

- 효율적인 전화상담 관리를 위한 시스템(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과 장애인 등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6항제1호(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제2호(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조정), 제3호(진정 외의 민원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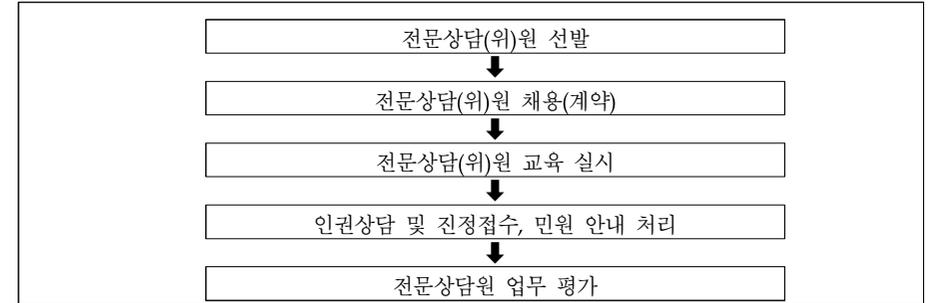
- 2002. 4. 위원회 사무처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진정접수 안내와 상담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인권전문상담원 제도 운영
- 2003. 1.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권순회상담 시작
- 2007. 1. 상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 제도 도입
- 2007. 10. 일용직 신분의 인권전문상담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2011. 인권전문상담원(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
- 2018. 1. 인권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119 인권현장 출동체계 도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취약분야 인권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취약분야 인권개선	2,764	1,270	1,270	1,234	1,234	△36	△2.8

4. 사업목적

① 인권침해 기획조사

- 형사절차에서의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 보호시설, 노인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 구금 및 보호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인권상황 개선

② 이주민·난민 인권증진 및 인종차별 철폐

- 이주민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도모

- 이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주 인권정책 추진

- 이주민권가이드라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주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③ 노인인권 증진

- 노인의 노동가동 연령 상황에 따른 정년연장, 노령연금 지급시기 조정, 노인복지 사각 지대 등 관련 인권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체계 강화

④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군과 관련된 인권전문가 그룹체계를 운영하고, 군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군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상황 제고

⑤ 아동인권 증진

-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아동인권 관련 정책 검토, 아동인권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인권 보호 및 증진

⑥ 조사활동 지원

-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조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물품의 구입 등 활동비 지급

⑦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 스포츠분야에서 오랫동안 관행화 된 폭력·성폭력 문화에 대한 부족한 인식, 피해에 대한 미흡한 보호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의 일시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역할 필요

- 스포츠분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인권문화 조성,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스포츠현장 모니터링, 스포츠분야 피해자 보호 지원,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권고), 제2호(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30조제3항(직권조사), 제36조제3호(실지조사)

② 추진경위

- 2007.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 예산 신설
- 2008. 여성, 이주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개선 사업 추가
- 2010. 노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2. 군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5. 아동인권증진 사업 추가, 사업명 변경(군인 인권교육→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2017. 윤일병 사망사건, 군 공관병 인권침해 등 군인권관련 실태조사 사업 '18년 예산에 추가 반영요청
- 2017. 진정접근성 보호 및 인권침해 사각지대인 구급다수인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확대에 따른 '18년 예산에 추가 반영요청
- 2018. 사회변화에 따른 차별 및 여성인권 관련 예산 증액, 시민 인권보호관 운영 예산 반영요청
- 2019.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신설하였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및 혐오 차별개선 예산 ' 20년 반영요청
- 2020.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내역사업으로 요청
- 2021. 차별시정 기획조사, 여성인권 증진, 혐오차별개선 예산 세부사업 분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아동, 노인, 군인, 이주민 등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근거	추진절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상임위원회)	사업계획→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실태조사(위원회의 협력)→용역결과보고서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38조	조사계획→소위원회 심의·의결→방문조사→방문조사결과보고서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38조
정책관계자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

사 업 명

(9)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2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장애인 인권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장애인 인권증진	521	637	637	547	547	△90	△14.1

4. 사업목적

①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차별 판단·시정기구로서의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업무 수행
-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권고,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장애인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현장 방문, 제도개선 권고, 성명, 여론 환기, 캠페인 등)하고, 장애인 인권증진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 도출
-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실시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③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2009년 비준·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및 장애인단체 동향을 파악,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등을 통해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제42조

제38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계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6. 12. 13. UN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의결
- 2007.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2007. 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사업 착수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2008. 12. 2.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 2009. 4.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등 인권교육 의무화
- 2009. 7.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10. 26.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 개선 권고)

- 2009. 4.~2015.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의무 이행기관 점진적 확대
 - 2010. 5.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2011. 5.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 2012. 10. 2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2014. 10.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 2019. 2. 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9. 8. 2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2020. 2. 10.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정책개선 권고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12. 29.)
 - 2021. 4. 16.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의견표명
 - 2021. 2. 8. 2021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특히 일반응역비 집행 사업)
 - 정책·제도개선 현안 발굴(실태조사, 진정사건, 전문가 자문 등)→수행 과제 선정→보고서 작성 및 의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정책·제도 개선

사 업 명
(10)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305	305	260	260	△45	△14.8

※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2021년부터 ‘취약분야 인권개선’ 일부 내역사업이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으로 조정됨

4. 사업목적

① 차별시정 기획조사

- 우리 사회 각 분야 차별 해소와 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사례 축적 및 명확한 기준 제시, 현안대응 및 기획조사를 통한 차별적 제도·관행과 인식 개선 업무

② 성평등 기반조성

- 다양한 성평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연대체 마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촉진과 성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③ 혐오차별 개선

- 각 영역에서의 혐오차별 개선을 위해 자율규제 실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공동체와 구성원의 역량 강화, 혐오차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문화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권고)·제3호(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5호(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6호(평등권 등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7호(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인권옹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8호(인권옹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제9호(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제10호(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인권보호와 향상 위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30조제3항(직권조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② 추진경위

- 2016.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 제작,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성희롱 결정례 영상물 제작,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조업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
- 2017.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성소수자 차별예방 도서개발 연구, 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 201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혐오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임신·출산·육아휴직 실태조사
- 2019. 고용사건 진정조사 매뉴얼 발간,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직권조사,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성평등포럼 개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혐오차별에 대항하고 연대하는 취지의 ‘마주’ 캠페인 전개, 범사회적 혐오차별 대응 필요성 공론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
- 2020. 차별판단기준 수립 연구, 평등법 제정 추진을 위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성평등포럼 개최, 언론·방송 등 영역별 혐오표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등 개발·보급 및 자율 대응 지원, 혐오차별 인식개선 기초연구, 사회적 소수자 기초현황 용역

- 2021. 유럽인권재판소 차별사건 판례 번역,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성평등포럼 개최,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혐오차별 대응 교육 콘텐츠 개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차별 및 혐오 관련 주요인권 현안 파악 → 기초 자료 수집 → 기획조사(직권), 사업 계획수립 → 소위(상임위) 결정 → (필요시, 사업공고, 계약체결) → 조사 또는 사업 추진→결과도출 및 보고서 작성 → 소위(상임위) 심의·의결 → 피해자 권리구제,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 배포 등 개선 추진

사 업 명

(11)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179	1,380	1,380	1,790	1,790	410	29.7

4. 사업목적

-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 점검, 제4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모니터링 및 자문
 -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대한 관계부처,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및 협력 증대
- ②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권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관련 법령·제도·정책 개선 검토

- 지역사회 인권제도화 지원,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인권제도 확산·구축
- 관련법령 재정비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 정보인권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 증진
-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환경이 더욱 다양화하고 침해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책과제 개발, 실태조사 등 사업을 통하여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를 달성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권경영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

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대한민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여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1조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2001. 5. 21.)
- UN의 UPR 제도 도입(2007)

② 추진경위

-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기능으로 2002년 이후 지속 추진
- 2006. 2.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 2008.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2. 4. 인권기본조례를 245개 지방자치단체 제·개정 권고
- 2013. 1.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
- 2013. 1. 노인인권상황 개선 정책개선 권고

- 2013. 3.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 2013. 10.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13.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권고
- 2014. 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관련 규정개선 권고
- 2014. 5.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 2014. 9.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 2014. 11.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 2015. 3.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바이오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 2015. 5.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6. 2.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 2016. 6.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 2016. 7.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 2016. 7.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
- 2016.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6. 11.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 2016. 11.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 2016. 11.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 2016. 1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 2016. 12.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201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 2017. 6.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7. 6.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2017. 8.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2017. 8.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권고 (16-진정-1044100)
- 2017. 11.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
- 2017. 11.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 2017. 12.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 2017. 12.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의 건
- 2017. 12.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 2018. 2. 경제협력개발기(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 2018. 5.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 2018. 7.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7.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7. 19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8.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 2018. 8.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2018. 11. 가축 살처분 매물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8. 1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 2019. 2.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 2019. 4. 농어촌 노인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6.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 2020. 2. 고문방지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
- 2020. 3.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2020. 4.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0.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0. 5.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 2020. 7. 정보인권포럼 구성 및 운영(7·10·11월 3회 개최)
- 2020. 8.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 2019. 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FGI 실시
- 2020. 9.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0. 10.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 2020. 10.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 2020. 10. 코로나19 특별대응팀 결과 최종보고
- 2020. 11.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2020. 12.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20. 1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0.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경찰) 등에 대한 의견표명
- 2020.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의 건
- 2021. 4.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 2021. 4.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2021.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2021. 6.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021. 9.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1. 1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 2021. 11.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1.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업무계획에 의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포럼, 심포지엄 개최, 정책과제 발굴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이해당사자 등 전문가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정책과제 선정 및 연구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 계획 및 연구용역과제(주제) 선정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접수 →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필요시)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접수 → 결과 발표회(필요시)
※ 통계청 '국가인권실태조사' 통계대행 별도 실시

사 업 명
(12) 북한인권 개선 (103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북한인권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북한인권 개선	164	162	162	151	151	△11	△6.8

4. 사업목적

① 북한인권 정책개발

-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
- 북한인권 문제 및 해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각 차이 극복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 확보

②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엔차원의 조사위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제3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고, 중국,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협력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03. 4.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연구사업 부재에 대한 비판 및 사업의 필요성 제기
- 2003. 4. 28. 국가인권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내 비상설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
- 2003. 11. 예결위에서 북한인권관련 2005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최종 결정
-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공표
- 2007. 북한이탈주민 인권관련 및 재외탈북자 현황 파악,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8.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포럼 운영, 국외 현지 조사
 - ※ 2008년 국정과제 선정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 2009.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 정치범 관련 실태조사 등
- 2010.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4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4.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3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7.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4월)
- 2018. 북한인권법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3월), 북한인권포럼 운영
- 2018.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19. 국제심포지엄 개최(6월), 북한인권포럼 운영
- 2019. 북한인권 토론회 및 간담회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북한보고서 심의 모니터링(5월)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재구성(1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의(5월)
- 2020.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논평(3.16.),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9.28.)
- 2020.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11. 26. 서울)
- 2021.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4월)
- 2021.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3회

- 2021. 유엔 북한인권결의(2003-2020) 번역 및 자료집 발간(2월)
-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11. 29.~30. 서울)
- 2021.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위원장 성명(12.1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국내외 실태조사 →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 → 사안별 권고 및 입장 표명

사업명						
(13) 국제교류협력 (103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제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제교류협력	978	1,288	1,288	1,204	1,204	△84	△6.5

4. 사업목적

- ① 국제회의(UN 및 국가인권기구 등) 참석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로 설립된 준국제기구로서 유엔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가 인권기구 연합체(GANHRI, APF 등)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 및 국내 인권상황과 우수사례를 해외에 공유
- ②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을 비롯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외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과정 운영
- ③ 인권현안 국제협력

-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해 각 국이 유사한 인권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및 상황 개선을 위하여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

④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내 고령화 실무그룹을 주도적으로 운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장기구 역할 수행, 2016~2022년)

⑤ APF 활동 지원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25개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공식적인 연합체임. APF는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연례적인 회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원으로서 국제부담금 지급을 통하여 APF의 운영을 지원

⑥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및 특별절차 대응과 인권조약기구(7개)의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전략 수립, 미가입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 촉구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⑦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는 우리나라가 아셈정상회의에 제안하여 2018. 6. 설립한 국제기구로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주도국으로서 센터 운영 지원

⑧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 국제인권규범 자료, 특별절차 보고서 등 수집·번역, 국내 소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21조
- APF 정관 제3조 제1항 b호(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인권관련 기구, 단체 간 협력과 공동 활동 증진)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권한과 책임) 3(e)조: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유엔관련 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그 책무로 하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문(A/RES/60/251, 2006. 3. 15.) 5(h): 인권이사회는 인권 영역에서 정부·지역기구·국가인권기구·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② 추진경위

- 2002. APF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가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ICC(현재 GANHRI로 변경됨), APF 정기회의 참석 등 활동
- 2004. APF 제9차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인권기구 대회 개최
- 2004. / 2007. APF 의장 수입국 수행
- 2005. / 2008. APF 부의장 수입
- 2007. ~ 2009. ICC 부의장 수입
- 2007. ~ 2019. 외국 인권기구 초청 연수 실시
- 2006. ~ 2011. ICC 승인소위원회 아태지역 대표 수입
- 2012. ~ 2015. ICC 집행이사회 집행이사국 수입(4년)
- 2015.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1차) ·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개최
- 2016. ASEM 노인인권 전문가포럼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6. ~ 2024.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수입
- 2017. ~ 2019.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234차)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9.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
- 2020.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부의장 및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1. 제26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출
- 2021.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 APF 활동지원 >

- 200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APF 정회원 가입
- 2004. 제9차 APF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최 시 APF로부터 1억원 지원받음
- 2014.~2016. APF 고문방지대사 역임
- 2021.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출 및 활동
※매년 APF에 1억 원 지원

< GANHRI 활동지원 >

- 2004. ICC A등급 정회원으로 가입
- 2007. 위원회 ICC부의장 수입(2009년까지)
- 2012. 제25차 ICC연례회의 임기3년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임
- 2016. 제29차 GANHRI연례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임

- 2019. 상반기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임(2020~2022)
- 2019.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임(2020~2024)
- 2021. 하반기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임(2022~2024)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등

7. 사업 집행절차

- UN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회의 참석 : 국외출장 계획수립 → 공무 국외 허가 → 회의 참석 → 결과보고서 작성
- 외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초청대상 국가인권기구 및 직원 선정 → 사업 집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현안 국제협력 : 기본계획 수립 → 행사용역기관 선정 → 국내외 외빈 초청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진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APF 활동지원금 : 지원요청 → 검토 → 지원 → 사후 모니터링(APF 총회 참가 등)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 지원요청 → 검토 → 지원

사업명						
(14) 국내교류협력 (10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내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내교류협력	287	289	289	254	254	△35	△12.1

4. 사업목적

- 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권 과제들을 공모하여 보조사업 단체 선정·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 **(전국 인권옹호자 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관계자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인권교육, 인권조례, 인권영향평가, 인권기본계획 등 인권행정 업무 전반의 업무경험과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인권 행정의 질 제고,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지역 인권단체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

- (권역별 지방인권기구 협력) 인권 가치의 지역 확산, 인권현안 의제 논의 및 공동 대응,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방인권행정의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해 인권시민 사회단체 및 지자체 인권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제10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② 추진경위

- 시민단체로부터 민·관 공동협력 사업 지원 요청 지속
- 2003. 민간의 인권옹호활동 사업 지원(계속), 41개 단체신청(23개 지원)
- 2004. 83개 단체 신청, 26개 단체 선정 지원
- 2005. 100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06. 73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7. 112개 단체 신청, 30개 단체 선정 지원
- 2008. 157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9. 132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10. 89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1. 72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2. 56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3. 56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4. 72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5. 40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6. 29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7. 36개 단체 신청, 10개 단체 선정 지원
- 2018. 34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9. 36개 단체 신청, 12개 단체 선정 지원
- 2020. 28개 단체 신청, 12개 단체 선정 지원
- 2021. 41개 단체 신청, 11개 단체 선정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인권단체 협력사업 수요조사 ⇒ 추진계획 수립 ⇒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응모) ⇒ 사업심사선정(사업심사위원회) ⇒ 선정단체 통보, 실무 교육 ⇒ 보조금 교부(1차) ⇒ 중간 평가(현장, 서면 모니터링 등) ⇒ 보조금 교부(2차) ⇒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보고서 수령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사 업 명
(15)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71	1,047	1,047	1,044	1,044	△3	△0.3

4. 사업목적

- ①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 인권정보시스템(HW, SW 및 기반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회선 사용료 등의 필수 운영 경비
- ②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 최신 ICT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③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 노후 장비 교체, 기반시설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및 SW도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16조
- ② 추진경위
 - 2002. 정보화기반 시설 구축 및 전자도서관리시스템 도입
 - 2003.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4. ~ 2005.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 2006.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2007. 인권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2008. 인권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2009. 진정처리시스템 고도화, 전산장비 광주통합전산센터 이전
 - 2010.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사업
 - 201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LMS 기능개선
 - 2012.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2013.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 수행
 - 2014. 차세대 진정처리시스템 구축
 - 2015. 차세대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 2016. 인권위 홈페이지 재구축
 - 2017. 인권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 2018. 스마트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 2019. 인권정책시스템 구축
 - 2020.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21. 인권 의사지원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일상감사 요청
⇒	사업계획(안) 보고(사무총장, 위원장)
⇒	사업추진 (조달청 계약의뢰⇒사업자선정⇒사업수행⇒검사 및 완료)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명	
(16)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656	747	747	777	777	30	4.0

4. 사업목적

- ① e-진정시스템 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 ② e-진정시스템 구축
 - e-진정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로 진정접수 등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현장업무시스템 구축이 필요
- ③ e-진정시스템 보강 및 개선
 - 인권현장에서 민원/진정 접수 등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7조, 제8조, 제16조

② 추진경위

-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진정사건 대국민 알람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요청
- 2019년 e-진정시스템 구축
- 2020년 현장진정업무 시스템 구축
- 2021년 e-진정통계 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일상감사 요청
⇨	사업계획(안) 보고(사무총장, 위원장)
⇨	사업추진 (조달청 계약의뢰⇒사업자선정⇒사업수행⇒검사 및 완료)
⇨	결과보고 및 평가